

충남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임상교육, 진료, 연구, 공공의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『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인간중심 병원』 충남대학교병원과 미래를 함께 할 열정 가득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충남대학교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에 근거하여 모집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 및 수집하고 있으며, 채용의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.

2022년 2월 18일
충남대학교병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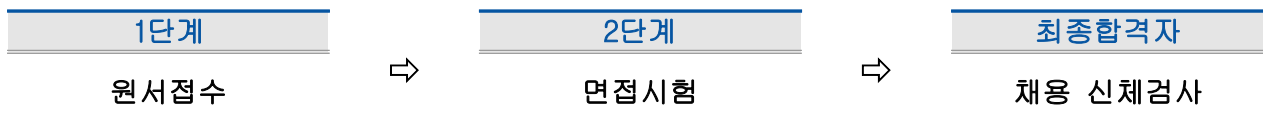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직종	모집분야	인원	자격요건	근무지
계약직	ACRO 모니터요원	1명	▪ (필수)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▪ (우대) 임상시험 관련 경력 1년 이상 ▪ (우대) 모니터요원 종사자교육 이수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3.6.30.(휴직 대체)	임상시험센터
	임상연구 코디네이터	1명	▪ (필수)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▪ (우대) 임상시험 등 종사자교육(CRC) 관련 교육 이수자 ▪ (우대)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업무 경력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3.8.3.(휴직 대체)	
	임상심리사	1명	▪ (필수)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소지자 ▪ (우대) 소아청소년 대상 심리평가 유경험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3.4.28.(휴직 대체)	진단검사의학과
	방사선사(A)	1명	▪ (필수)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▪ (우대) 종합병원 및 혈관조영실 6개월 이상 근무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3.3.31.(휴직 대체)	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
	방사선사(B)	1명	▪ (필수)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2.5.30.(휴직 대체)	
	임상병리사	1명	▪ (필수)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3.5.31.(휴직 대체)	진단검사의학과
	운전	1명	▪ (필수)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	총무과
	사무보조	1명	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	원무과
	병동보조사	1명	▪ (필수) 야간 및 주말(공휴일) 근무 가능한 자 (3교대)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6개월	간호행정과

	청소 (장애인 단시간)	1명	▪ (필수) 장애인 등록자 ▪ (필수) 4시간/일 근무 가능한 자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	총무과
업무 지원 계약직	콜센터	1명	계약기간 : 임용일 ~ 2024.3.31.(휴직 대체)	원무과
총 모집인원		11명		

- 본원 인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만 지원 가능
- 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만 지원 가능
- 필수 응시 자격의 경우, 공고 마감일 기준 자격 소지자만 지원 가능
- 응시연령 제한 없음
- 휴직대체의 경우, 대체하는 휴직자가 조기 복직을 원할 때 해당일 30일 전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- 각 모집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(중복지원 확인 시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)
- 충남대학교병원 2월 보조금계약직 직원 모집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(중복지원 확인 시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)

2. 전형(시험)단계



3. 전형일정

※ 전형 일정은 본원 사정(코로나-19 등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일정 변경 시 개별 문자 안내

전형일정	전형일시	비고
원서접수	2022.2.18.(금) ~ 2022.2.24.(목) 17:00	면접대상자 개별 안내
면접시험	3월 초 예정	
합격자통보	3월 중 예정	개별 안내
채용신체검사	임용일 전까지 실시	개별 실시
임용예정일	3월 중 또는 4월 초 예정	

4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- 1) 접수기간 : 2022년 2월 18일 (금) ~ 2022년 2월 24일 (목) 오후 5시
- 2) 접수방법
 - 충남대학교병원 채용정보센터(<http://www.cnuh.co.kr/recruit/index.jsp>)를 통한 온라인 접수 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
 -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
- 3) 등록서류(필수서류 미등록시 면접응시 불가)
 - (필수) 자기소개서 작성,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(면허)증, 경력증명서 등
 - (해당자) 우대사항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 등)
 - ☞ 담당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며, 제출처란에 “충남대학교병원”을 반드시 명시 (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유무는 국가보훈처로 문의)
 - (해당자) 기타 자격(면허)증, 경력증명서 사본
- 4) 등록방법 : 등록서류 스캔 후 원서접수 작성화면에서 인터넷 업로드
 - ※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학교명, 나이, 사진 등은 가린 후 업로드
 - ※ 필수 응시 자격 증빙서류(면허증, 자격증 등) 미등록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

5. 면접시험 안내

- 1) 면접일시 : 3월 초 예정(면접대상자 개별 안내)
- 2) 결과발표 : 3월 중 발표 예정(개별 안내)

6. 임용

- 1) 임용 시 면허(자격)증 등 구비서류에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 또는 미제출 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
- 2) 최종합격(신규임용)자는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, **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**를 할 수 있음
- 3)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확인될 때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4)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,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- 5) 추후 인사발령에 의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도 있음

7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1) 필수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- 2)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
- 3) 기타 자격증(증명서) 사본 1부
- 4)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5) 최종학력증명서 1부

- 6) 채용신체검사결과지 1부
- 7) 급여통장사본 1부
- 8) 증명사진 1부

8. 기타사항

- 1)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2) 채용신체검사 결과 회신 전에도 채용할 수 있으며, 채용된 이후에도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3)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인사규정 등 본원 내부규정 등에 의하며,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4) 신규직원 선발 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하거나 책임자가 없을 시,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5)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- 6)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‘별지 제3호서식’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(rns707@cnuh.co.kr) 또는 팩스(042-280-6226)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,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- 7) 불합격자 중 해당 채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(rns707@cnuh.co.kr)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8)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별(면접 등)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임용결격사유 (인사규정 제24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12.28>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개정 1996.12.11>
9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10. 삭제 <2017.06.23>
11.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·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1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6.12.28>
13. 『형법』제303조 또는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
14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<신설 2019.09.30>
1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
16.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